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. 5. 16 선고 2017가단1014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기술보증기금

2. 신용보증기금

3. B

4. C

5. D

6. E

7. F

변론 종결2018. 4. 25.

판결 선고2018. 5. 16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, C, D, E,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0. 11. 30. 접수 제269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피고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은 별지 목록 기재 1. 부동산에 관한 위 가.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1,2,4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3. 피고 3,5,6,7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임수희

별지